

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 규정

제정 2023. 11. 24.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미래교육혁신원 교수학습개발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의 조직 및 업무,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장 조직 및 업무

제2조(조직) ① 센터에는 교수학습개발센터장(이하 “센터장”이라 한다)을 두며, 센터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미래교육혁신원장이 추천하고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센터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연구전임교원, 전문연구원, 직원 및 행정조교를 둘 수 있으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에 따른다.

제3조(업무) 교수학습개발센터는 아래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.

1. 혁신적 수업모델 개발, 연구 및 확산에 관한 사항
2.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3. 교수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환류에 관한 사항
4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연구·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
5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
6. 학습역량강화 프로그램 사전조사 및 성과분석 등 환류에 관한 사항
7. 교내외 유관 부서 간 유기적 협력을 통한 비교과 연계 및 운영에 관한 사항
8. 교수학습개발센터운영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9.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항

제3장 위원회

제4조(위원회 구성) ①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교수학습개발센터 운영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- ② 위원회는 총장이 위촉하는 9인 이내로 구성하며 미래교육혁신원장, 교무연구처장, 교수학습개발센터장, 원격교육개발센터장이 당연직 위원이 된다.
- ③ 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하며,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.
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위원회 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의 기본계획(성과관리계획 수립 등)에 관한 사항
2. 센터 운영 규정 개정 및 폐지
3. 센터 업무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4.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

제6조(위원회 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.

- ②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,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.
-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기타

제7조(규정등의 제·개정) ① 미래교육혁신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를 발의할 수 있다.

- ② 교수학습개발센터의 운영에 관한 내규 및 세칙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.
- ③ 규정 등의 제·개정 절차 및 세부사항은 「제규정 기본 규정」 등 관련 제 규정을 따른다.
- ④ 이 규정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.

부칙(기획예산팀-2472, 2023.11.24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11월 2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규정의 폐지) 이 규정 시행일로부터 「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규정」은 폐지한다.

제3조(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「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규정」에 따라 위촉된 교수학습개발지원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.